



사료용 생균제의

품질관리 기준 및 현황

최근 친환경축산물생산운동이 거세지면서 사료내 생균제사용이 급격히 증가, 제조업체 수가 '01년 대비 '03년 현재 80%가 증가하는 등 생균제 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관련, 생균제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그어느때보다도 강조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따라서, 본지 편집부에서는 생균제의 품질관리 기준 및 현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편집자 주 -

□ 제조업체 및 생산현황

(단위: 개소/톤)

연도	제조업체수	생산량(톤)
'01년	71	115
'03년	1,063	6,389

□ 생균제 주요제조업체

(단위: 톤)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주)진바이오텍	이찬호	02-6300-8222	충남 공주시 계룡면
(주)프로바이오닉	박용하	042-862-1320	대전 유성구 어은동
(주)이지바이오시스템	지원철	031-452-1590	충남 천안시 직산면
(주)크린랜드	김형진	054-075-5454	경북 칠곡군 가산면
우진비앤지(주)	강석진	02-795-2361	경기 화성군 양감면
(주)이앤티	강춘성	041-733-3591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마광	신영근	02-3463-0541	충북 음성군 대소면
기타 119개 업체	경기(27), 강원(4), 전남(8), 전북(10), 충남(18) 충북(16), 경남(11), 경북(6), 제주(3), 기타(16)		

사료용 생균제의 품질관리 기준 및 현황

□ 사료용 생균제의 범위(종류)

구분	한글명	학명	관계규정
생균제	엔테로코커스 웨시엄	Enterococcus faecium	사료공정서 (농림부고시 제2003-42호)
	엔테로코커스 웨카리스	Enterococcus faecalis	
	클로스트리움 부티리쿰	Clostridium butyricum	
	바실러스 코아굴란스	Bacillus coagulans	제6조관련 별표3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Bacillus subtilis	
	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비피도박테리움 서모필럼	Bifidobacterium thermophilum	
	비피도박테리움 슈도롱검	Bifidobacterium pseudolongum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Lactobacillus acidophilus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Lactobacillus salivarius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럼	Lactobacillus Plantarum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Lactobacillus reuteri	
	페디오코커스 애시디락티시	Pediococcus acidilacticii	
유익 곰팡이균	아스퍼질러스 니이거	Aspergillus niger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Aspergillus oryzae	
효모제	맥주효모	Beer Yeast	
	토룰라효모	Torula Dried Yeast	
	제빵효모	Baker's Yeast	
	양조효모	Brewers Dried Yeast	
	조사건조효모	Irradiated Dreied Yeast	
	효모배양물	Yeast Culture	

※ 합제는 가능하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정 수록 생균제도 성분등록가능

□ 성분등록사항(사료공정서 제11조)

사료 종류	등록성분		
	최소량(%)	최대량(%)	기 타
생균제 (D.F.M)	주요성분	-	• 생균제(D.F.M : Direct Fed Microorganism)의 경우는 주요 균주명 및 생균수최소량 표시(cfu/g)

□ 생균제 제조시설기준(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시설명	시설기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가.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나.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원료 및 부형제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 및 혼합시설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설비를 갖출 것
라. 배양시설	미생물배양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마. 계량시설	원료 및 제품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갖출 것
바. 포장시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주) 1) 동일 공장안에서 2 이상의 보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보조사료별로 분쇄·혼합시설 및 계량시설을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하며, 그밖의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시설로 갖출 수 있다.
 2) 생균제제조업자는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일부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생균제 제조업가 비치해야할 장부

(시행규칙 제17조 3항 및 제31조 관련)

- 원료수불대장
-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결과)

□ 품질관리기준 <자가품질검사;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 (가) 사료의 보증성분 또는 성분규격: 6월마다 1회 이상
- (나) 사료중 유해물질: 6월마다 1회 이상
-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성분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료용 생균제의 품질관리 기준및 현황

□ 품질관리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사료관리법 시행규칙 32조 관련)

위반 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성분등록관련〉				
6.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성분등록을 하지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때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등록취소
나.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3호	영업의 일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다. 등록성분의 등록치와 설계치가 오차범위를 벗어날때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2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표시사항 관련〉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포장 및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5호			
(1)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또는 주의사항을 위반한때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2) (1)을 제외한 3개사항 이상을 위반한 때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3) (1)을 제외한 3개사항 미만을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 정지 1월	영업의 일부 정지 2월	영업의 일부 정지 3월
〈자가품질검사 관련〉				
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5호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2) 검사실시비율이 검사항목의 50% 미만일 때		영업의 전부 정지 15일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
(3) 검사실시비율이 검사항목의 50% 이상일 때		영업의 전부 정지 7일	영업의 전부 정지 15일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의 전부 정지 7일	영업의 전부 정지 1월	영업의 전부 정지 3월